

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3년 12월호

1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퇴직연금감독규정
- 나.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
- 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
- 나.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퇴직연금감독규정 (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)

나.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(외국인 투자등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 삭제)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퇴직연금감독규정 (2023/11/16 개정·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퇴직연금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
 - 불공정 영업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에 제공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규율체계의 공백을 메우고 공정경쟁 규율이 강화
 - 퇴직연금 적립금이 350조원 규모에 이르는 등 시장영향력이 높아진 가운데,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회사채시장 검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일어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리 공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등 불공정 영업행태가 발생
- 비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(제23조)
 - 개정안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까지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공시
 - 퇴직연금사업자는 익월(T+1월) 판매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금월(T월) 공시할 의무(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 금지)
 - 퇴직연금시장에 공급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금리 베끼기 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조 관행을 개선(제15조의4)
 -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
-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서는 동일기능-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(제9조, 제11조, 제15조의4)
 - (원리금보장형)사모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이 금지됨
 - 금리 공시 의무, 수수료 수취 · 제공 금지, 자사 상품 판매 금지 규제
-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(제10조)
 - 퇴직연금 제도별(DB · DC · IRP)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
 - 확정기여형(DC형) 및 개인형(IRP형)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
 -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·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, 계열회사 및 지분법 관계자가 발생한 증권의 편입 한도를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10% → 20%로, IRP의 경우 10% → 30%로 상향
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동일인 발행 특수채·지방채의 한도 상향(제13조)
 - DB형 퇴직연금 운용전략(ALM: Asset-Liability Matching, 자산-부채 매칭)을 감안하여 DB형에 한해 특수채 · 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30 → 50%로 상향
- 적립금의 100%까지 투자 가능한 '투자위험을 낮춘 상품'의 범위를 확대(제11조)
 -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편입한도를 자본시장법 규율과 동일하게 40% 이내 → 50% 미만으로 상향
 - 국채 · 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RP매수와 MMF 등을 추가
- IRP형에서 '보증형 실적배당보험'의 도입 근거 마련(제8조의3)
 -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(주로 펀드)으로 운용하고, 운용 이익이 발생할 경우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 상품
 - 은퇴근로자들이 일시금 대신 연금수령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

나.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(2023/11/16 개정 · 2023/12/14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, 금융금융투자업규정 개정(2023. 7. 7)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투자등록제 폐지(제5-2조 제1항)
 - 외국인 투자등록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 삭제

- 장외거래 편의제고(제5-4조 제1항 및 제2항)
 - 외국인 상장증권 장외거래 사후신고 대상 확대

- 통합계좌 활성화(제5-3조 제10호)
 - 외국인 통합계좌 관련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폐지
 - 금융투자업자가 월 단위로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같음(제5-1조의2)

- 투자등록제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(제34호) 및 외국인 통합계좌 관련 투자 내역 보고 서식(제35의2호) 등 삭제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2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포괄심의 명칭 변경 및 세부 심의기준 마련)

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외국인 대표투자자계좌 유형 추가 및 식별수단 확대)

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KRX K-뉴딜지수 명칭 변경 및 주식시장의 ETF 호가가격단위 변경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23/11/21 개정 · 2023/11/2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복수의 불성실공시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제재심의기준을 정비하고,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 운영과정에서 대두된 실무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- 금융위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확대방안(2021. 1)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대상을 확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포괄심의 명칭 변경(별표 2 제4호 가목)
 - ‘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(포괄주의 공시제도)’(2016. 5. 도입)와의 용어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혼동 방지, 코스닥시장과의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해 ‘병합심의’로 명칭 변경
- 포괄심의 세부 심의기준 마련(별표 2 제4호 나목)
 - 포괄심으로 인해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의무 위반사실 1개당 벌점 1점씩 추가
 - 단, 포괄심의를 따른 제재가 각각의 공시의무 위반사실별로 심의할 때보다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심의 미적용 가능
- 동시심의 근거 신설(별표 2 제5호 가목)
 - 같은 날 복수의 불성실공시건이 발생하거나,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중 추가 지정예고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시에 심의 가능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동시심의 세부 심의기준 마련(별표 2 제5호 나목)
 -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력과 관련된 감경사유(6개)는 복수의 불성실공시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적용
- 상장·공시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(제12조 제3항)
 - 공시의무 위반 사유로 실질심사 진행 중인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상장·공시위원회 심의 제외 요건 추가
-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대상 확대(제13조 제1항)
 -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대상을 최근 5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확대
-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대상 확대(제7조의2)
 -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확대
-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 정비(별지 제8호 서식)
 -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신고서 상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붙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내용 정비

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3/11/23 개정 · 2023/12/1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자 제도 개선방안에 맞추어 외국인 대표 투자자계좌 유형을 추가하고 외국인 식별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라 외국인 대표투자자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에 '외국 금융투자업자'를 추가(제9조의3)
 - 외국인 대표투자자계좌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일괄매매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좌
- 금융투자업 개정에 따라 외국인 식별수단을 확대하고 외국인 식별수단 유무를 호가 시에 구분 입력하도록 함(제12조 및 제104조)
 - 외국인 식별수단은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외에 여권번호 및 법인 식별기호(LEI)로 확대
 - 외국인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부여 여부 구분은 폐지하고, 외국인 식별수단 유무 구분을 신설하되, 외국인 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해 내국민 대우 외국인은 식별수단이 없는 것으로 구분 입력

3) 관련 규정 개정

-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(2023/11/23 개정 · 2023/12/11 시행)
 - 제7조의2, 제7조 및 제39조, 별표 5, 별표 5의3, 업무서식 6의5)
-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(2023/11/23 개정 · 2023/12/11 시행)
 - 제8조, 제7조 및 제65조

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3/11/24 개정 · 2023/11/2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KRX K-뉴딜지수 명칭 변경 및 주식시장의 ETF 호가가격단위 개편을 반영하여 관련 상품의 명칭 및 호가가격단위를 변경하고, 투자자의 정밀한 헤지거래를 위하여 협의대량거래의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하기 위함
- 자기거래 타회원 위탁제도의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대상 위탁자의 범위 확대, 신고기한 축소 등을 추진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KRX K-뉴딜지수 명칭 변경 반영(제4조의7, 제4조의9, 제46조, 제75조, 별표 1의3)
 - KRX K-뉴딜지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섹터지수선물거래 중 KRX K-뉴딜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명 등 수정

[KRX K-뉴딜지수 명칭 변경 내역]

개정 전	개정 후
KRX BBIG K-뉴딜	KRX BBIG
KRX 2차전지 K-뉴딜	KRX 2차전지 TOP 10
KRX 바이오 K-뉴딜	KRX 바이오 TOP 10

- ETF 호가가격단위 개편 반영(제20조의4)
 - 주식시장의 ETF 호가가격단위 개편을 반영하여 ETF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를 그와 동일하게 변경
 - 2천원 미만의 ETF의 호가가격단위를 기존 5원에서 1원으로 개편

□ 협의대량거래의 호가가격단위 개선(제69조)

- 주식상품거래 및 주식상품거래로 구성된 선물스프레드거래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호가가격단위를 축소하여 투자자가 협의대량거래를 통하여 보다 정밀한 헤지가 가능하도록 개선

[협의대량거래 호가가격단위 개선 세부 내역]

대상상품	기존	개정
코스닥150선물 · 스프레드	0.1p	0.01p
코스닥150옵션	0.1~0.5p	
KRX300선물 · 스프레드	0.2p	
섹터지수선물 · 스프레드	0.2~0.5p	
주식선물 · 스프레드	1원~1,000원	1원
주식옵션	10원~200원	
ETF선물 · 스프레드	5원	

□ 자기거래 타회원 위탁제도 개선(제114조)

- 타회원 위탁계좌의 신고기한을 축소하고 위탁자가 회원 예정자인 경우에도 주문을 위탁받는 계좌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거래 제약상황 해소
 - (신고기한) 5거래일 전에 → 사전에
 - 현재 위탁자가 회원이 된 이후부터 타회원 위탁계좌 신고가 가능하나, 회원이 될 것이 확정된 자인 경우에는 회원가입일 또는 전환일의 직전 거래일 장종료 시점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

□ 일괄호가취소 신청의 세부사항에 월요일 결제주거래 반영(별표 6의2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(여전채 편입한도 8% 적용시기 유예)

나.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(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 개정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(2023/11/29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금융위의 「금융시장 현안 점검 · 소통회의」(2023. 11. 23)를 통해 발표된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중 여전채 편입한도 6개월 유예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— 2024년 1월부터 8%로 적용 예정이었던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중 여전채 편입한도(2023년 말까지 12%)를 6개월 유예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는 12%를 유지토록 발표

2) 주요 내용

□ 여전채 편입한도 8% 적용시기 유예(제38조의5 제1항)

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여전채 편입한도 9% 이하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

•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여전채 편입한도를 12%이하로 함

기존				▶	개정			
구분	규제비율				구분	규제비율		
	~'22. 12. 30.	'22. 12. 31. ~'23. 12. 31.	'24. 1. 1~		~'22. 12. 30.	'22. 12. 31. ~'24. 6. 30.	'24. 7. 1~	
여전채 편입한도	15%이하	12%이하	8%이하		15%이하	12%이하	8%이하	

* 동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전 기발행분에도 적용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(2023/11/30 개정 · 2023/12/1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상장지수증권(ETN)의 소수점 배율(소수 2째자리까지) 상품상장등을 허용함에 따라 가격제한폭 변경 내용 반영 및 예시를 구체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 개정(5.)
 - (기존) 2배 이내의 0.5배율 단위(음의 배율을 포함) 상품만 상장 가능
 - (개정) 0.5배율 단위 상장기준을 개정하여 2배 이내(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 3배 이내)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자율화함에 따라 가격제한폭 개정 내용 등을 반영
 - 한국거래소 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」 별표 2의3 제2호 라목, 별표 2의5 제2호 라목(2023. 10. 17. 개정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